스토킹 피해자 권리 안내

스토킹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.

❶ 스토킹행위가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긴급응급조치 신청이 가능하며 판사는 다음의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.

1)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,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
2)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, 가족에 대한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

❷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잠정조치 요청이 가능하며 판사는 다음의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.

1)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
2)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,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
3)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, 가족에 대한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
4) 「전자장치부착법」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('24.1.12.부터 시행)
5)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

❸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,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(무료)('24.1.12.부터 시행)

❹ 피해자 조사 시 진술조서에 가명을 사용하여 신분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
- 가명을 요청하면 초기 진술서 작성 시 기재된 실명을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, 타 기관(진단서, 감정서 등) 제출 시 개인정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재판과정에서 서류 열람·등사 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

❺ 모든 피해자는 조사 시, 배우자·직계친족·형제자매·동거인·고용주·변호사 그 밖에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를 신뢰관계인으로 동석시킬 수 있습니다.

❻ 열람을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, 정보공개시스템(www.open.go.kr)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·관리하는 공공기관(경찰, 검찰, 법원 등)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상담 챗봇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우측 QR코드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. 접속 후 「범죄·안전」→「여성폭력 피해자지원」을 클릭하세요.

스토킹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

스토킹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보호·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지원기관

❶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(☎1366)를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및 각 지역 쉼터·병원·법률기관·정부기관으로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.

❷ 한국 여성의 전화(☎02-2263-6465)를 통해 의료·법률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※ 상담시간 : 평일 오전 10시 ~ 오후 5시

❸ 다누리콜센터(☎1577-1366)를 통해 이주여성은 24시간 통역 및 상담 지원, 쉼터 입소 및 의료·법률 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
❹ 스마일센터,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심리전문가와 상담 등 지속적인 심리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
❺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,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(☎02-3476-6515)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이나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❻ 범죄피해자지원센터(☎1577-1295)에서 생계비, 치료비, 취업 지원 등 피해 회복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범죄피해자 안전조치

❶ 스토킹 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·신고자 및 그 친족, 반복적으로 생명·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은 다음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- **(보호시설 연계 또는 임시숙소 제공)** 주거지 거주가 곤란하거나 보복범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전문 보호시설로 연계하거나 임시숙소 일시 제공
- **(신변경호)** 위험 발생이 명백·중대한 경우 한시적으로 밀착 보호 또는 법원 등 출석·귀가 시 동행
- **(맞춤형 순찰)** 피해자 주거지 및 직장지 등 주변에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 맞춤형 순찰 실시
- **(112시스템 등록)** 112시스템에 스토킹 피해자의 주거지·직장지 등과 휴대폰 번호를 사전에 등록하여 긴급신고체계 구축 및 긴급출동
- **(스마트워치 지급)** 스마트워치의 SOS버튼 클릭 시 112상황실로 전화연결됨과 동시에 112시스템에 자동접수되어 신고자 위치로 긴급출동
- **(CCTV 설치)** 피해자 주거지에 CCTV를 설치하고 경찰서 112상황실과 연동시켜 피해자가 CCTV앱으로 긴급상황 알림 시 112상황실에서 긴급출동 지령

이런 경우 신고해 주세요.

❶ 스토킹 행위자(이하 '스토커')가 주거지나 회사 등 내가 있는 위치와 장소 인근에 나타난 경우

❷ 스토커가 이메일, 휴대전화, 집이나 회사의 전화기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

❸ 내가 자주 다니는 장소에 스토커가 다녀갔다는 얘기를 전해 들은 경우 등

❹ 나의 개인정보(성명, 주민번호 등)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유포된 경우 등